

제 8 조 【이용계약】

1.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인정 기간에 맞추어 수급자 및 보호자와 합의하여 산정한다.
2. 계약목적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·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이다.
3.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한 때에는 가족, 친척을 포함한 법적 대리인이 계약 가능하다.
4.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은 다음과 같다.

월한도액			1등급	2등급	3등급	4등급	5등급	인지지원등급
			2,512,900	2,331,200	1,528,200	1,409,700	1,208,900	676,320
구 분			금액(원)		본인부담금(15%)			
등급자	방문요양	30분이상	2,541		2,617			
		60분이상	3,687		3,798			
		90분이상	4,968		5,118			
		120분이상	6,324		6,514			
		150분이상	7,374		7,596			
		180분이상	8,303		8,553			
		210분이상	9,251		9,529			
		240분이상	10,205		10,512			
등급외자		본인부담금 100%						

- 1) 본 센터의 계획에 의해 서비스로 진행되는 부분은 전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하여 진행한다.
 - 2) 국민기초수급 대상자 등 특별한 경우, 서비스 이용 전 장기요양 서비스 비용에 대한 시군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용료나 비용부담액은 발생하지 않는다. 다만 노인성 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.
 - 3) 병원이용 등 서비스 제공에 따른 실비 발생은 수급자 본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 - 4) 장기요양서비스 본인부담금은 15%를 원칙으로 하나 의료급여 및 경감 대상자의 경우 명시된 비율(6%, 9%)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납부한다.
5.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.

1) 신원인수인의 권리

- ①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
- ②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의해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
- ③ 기관에서 실시하는 정기적 방문 상담을 통해서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, 시정을 요구할 권리

2) 신원인수인의 의무

- ① 대상자로의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 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
- ②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 비용을 부담할 의무
- ③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
- ④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

6. 계약의 해지

- 1) 수급자가 사망하면 계약은 자동 종료된다.
- 2) 이용자에게 아래의 사유가 발생할 때 유선 통지 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 - ①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
 - ② 서비스이용료가 12개월 이상 미납되어 보호자가 더 이상 납부하지 못할 경우
 - ③ 계약서류를 허위로 제출하여 자격을 상실한 경우
 - ④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될 경우
- 3) 서비스이용자가 아래의 사유로 계약해지를 원할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 - ① 이용자가 서비스에 만족하지 못해 계약해지를 원할 경우
 - ②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약해지를 희망할 경우
- 4) 병원에 장기입원으로 인하여 서비스 불이용이 30일 이상이 되면 자동계약이 종결된다.